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송파 제4선거구,

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
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,

서울시 내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
신고대상에 대학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현재 서울시 내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 시
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별표2의2 규정 외 대상은 가설건축물 허가를
득하여야 합니다.

○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과 달리 차양시설·

비가리개시설이 건폐율, 용적률 등에 포함되며,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의 추가 절차도 있는바 설치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.

- 특히 초·중·고등학교 가설건축물 설치가 신고대상인 것과 달리 대학교는 허가대상으로 학교 내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설치 시 건폐율, 용적률에 차감을 받으며, 설치에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대학교 가설건축물 설치도 신고로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폭염, 우천 등에도 대학교 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장려함은 물론, 일반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시설 간 형평성도 맞추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